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합84456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심태섭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이은희

변론 종결2024. 9. 6.

판결 선고2024.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7.부터 2023. 9.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전자, 정보통신기기 관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2)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를 100% 보유한 사람이다.

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2023.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상회사 주식 400,000주를 100억 원(1주당 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상주식의 양수도)

- (3)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 체결일인 2023년 7월 26.일에 계약금 일십억 원(₩1,000,000,000)을, 2023년 8월 18.일 또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는 날(이하 '거래종결일'이라 함)로서 제2조 제1항의 2인의 이사가 선임됨을 확인하는 즉시 잔금 구십억 원(₩9,000,000,000)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단, 원고가 2023년 6월 24.일) 공시한 3회차 전환사채 납입금액이 100억 원이 미달될 경우 본 거래는 종결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못 할 경우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면책되며 당연히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계약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미납입

- 1) 원고는 2023. 6.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20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납입일 2023. 8. 16.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공시하였다.

2) 이 사건 전환사채의 납입일인 2023. 8. 16. 인수대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문언,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납입금액이 100억 원보다 미달될 경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전환사채의 납입일에 인수대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23. 8. 16. 해제조건이 성취로서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해제조건 성취일 다음 날인 2023. 8.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상회사는 2023. 5.경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자 원고의 최대주주인 D와 사이에 인수 우선협상권 선정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인수자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지정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23. 6. 15. D와 사이에 원고의 경영권 및 주식 2,590,000주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원고의 주식 2,590,000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양수도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을 앞두고 원고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E은 D에게 잔금지급기일과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신규이사 등을 선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D는 E의 요청대로 이사 선임을 위한 원고의 2023. 8. 4.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2023. 8. 7. 정족수 미달로 부의안건을 상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의 기존 전환사채권자인 F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E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의 최대주주가 F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공시가 2023. 8. 8. 이루어지자, E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철회하였고 결과적으로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결국 E은 D 및 원고의 비협조 또는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경영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반신의행위로 인한 것으로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150조 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D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D가 아닌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조건을 성취시켰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8.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건이 부결된 것은 정족수 미달로 부의안건을 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와 같은 정족수 미달에 관하여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E도 원고에 대한 2023. 8. 17.자 내용증명에서 'D는 E이 추천한 이사를 원고의 이사로 선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D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던 점, ③ 원고의 최대주주가 F으로 변경된 것은 F이 적법하게 전환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로서는 그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였을 뿐인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해제조건을 성취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9.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세라

판사김민지

판사박재남

1) '2023년 6월 14.일'의 오기로 보인다.